| 의 안 번 호 | 1534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일 자 : 2019. 4. 5.(금)

나. 제 출 자 : 문희성 의원 외 10명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4. 5.(금)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4. 18.(목)

## 2. 제안설명 요지(문희성 의원)

###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2015. 10. 26.의결) 반영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2019. 3. 25. 시행)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을 개선·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및 신고내용 확인·검증(안 제6조)**

-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내용 점검 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

○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 관리강화(안 제8조)**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등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와 관련한 정보요구 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서식 마련

○ **위반시 제재방안 마련(안 제10조)**

- 겸직신고 위반 및 영리거래 금지 위반 등 비위유형에 따른 구체적 징계기준 설정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안 제12조)**

- 의원의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와 관련한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 하였으며, 직무관련자인 경우 회피하지 않는 경우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써 배제할 수 있도록 함.

○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13조)**

-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원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14조)**

- 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의장은 해당 의원에게 그 행위 등을 중지·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가족 채용 제한(안 제15조)**

- 의원은 의회, 구 집행기관 및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

○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6조)**

- 의원은 구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의원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구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되도록 함.

○ 알선·청탁 등의 금지(안 제21조)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함.
-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안 제24조)

-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 함.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25조)

- 의원은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등 의원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등의 신고(안 제31조)

-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지방의회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함.
- 의장은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의원에게 안건심의 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행동강령 교육 및 서식 등을 절차와 방법에 맞도록 신설·조정**

**(안 제49조,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20호 서식)**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숙)

○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반영하고,
2019. 3. 25.일자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 관 련 법 규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관 련 공 문

국민의 정책참여,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 으로!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국민콜 110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별 조치사항 안내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71(2019.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통보드린 바와 같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을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개정령이 공포(2018.12.24.)되어 2019.3.25. 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각급 지방의회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을 송부하오니, 이를 참고하여 자체 의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신 후 그 내용을 우리 위원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참고로, 자체 의원 행동강령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박기준 사무관(☎ 044-200-767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
2.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수신자 전국 지방의회(광역, 기초)


행정사무관 박기준 행동강령과장 전결 2019. 1. 29. 박형준
협조자
시행 행동강령과-173 (2019. 1. 29.) 접수 의회사무국-390 (2019. 1. 29.)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국민권익위원회) / http://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676 팩스번호 044-200-7942 / pjehc248@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부관련 모든 상담·안내는 국민콜110으로!

# < 기관별 이행현황 >

| 구분 | 이행완료(39개) | 일부이행(32개) | 미이행(172개) |
|---|---|---|---|
| 서울 | | 중구 | **서울특별시**<br>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
| 부산 | 해운대구 | **부산광역시**<br>강서구, 금정구, 동구, 서구, 영도구 | 기장군, 남구, 동구, 동래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중구, 진구 |
| 대구 | 달성군 | 동구 | **대구광역시**<br>남구, 달서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
| 인천 | 옹진군 | 계양구 | **인천광역시**<br>강화군,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
| 광주 | 광산구, 동구, 서구 | 남구 | **광주광역시**<br>북구 |
| 대전 | | 서구 | **대전광역시**<br>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 |
| 울산 | **울산광역시** | 남구, 중구 | 울주군, 동구, 북구 |
| 세종 |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 |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수원시, 의왕시, 하남시 | **경기도**<br>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파주시, 평택시 |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고양시, 성남시, 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포천시, 안성시, 오산시, 이천시, 과천시, 용인시, 화성시, 여주시, 구리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
| 강원 | **강원도**<br>춘천시, 철원군, 횡성군 | 강릉시, 평창군 |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홍천군, 화천군 |
| 충북 | 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 **충청북도**<br>보은군 | 청주시, 단양군, 영동군 |
| 충남 |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 **충청남도**<br>보령시, 천안시 | 계룡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 전북 | 김제시, 전주시, 무주군, 완주군 | **전라북도**<br>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 남원시, 익산시, 고창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
| 전남 | 함평군 | | **전라남도**<br>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
| 경북 | 경주시, 울릉군 | | **경상북도**<br>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
| 경남 | 의령군, 함양군 | 창원시, 남해군 | **경상남도**<br>거제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통영시, 거창군, 고성군, 산청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
| 제주 | | | **제주특별자치도** |

반칙과 특권 마침표[?] 변화의 시작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 점검결과 송부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경제제도개선과-2179, '15.11.15.)을 귀 기관에 권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이행실적'(제도개선총괄과-975, '19.2.12.)의 제출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제도개선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며,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현황 1부. 끝.

국민권익위원회

수신자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 기초자치단체, 기초의회

| | | | | | |
|---|---|---|---|---|---|
| 행정사무관 | **추수진** | 제도개선총괄 과장 | **정재일** | 권익개선정책 국장 | 전결 2019. 3. 19. **안준호** |
| 협조자 | | | | | |

시행 제도개선총괄과-1519 (2019. 3. 19.) 접수 의회사무국-1103 (2019. 3. 19.)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국민권익위원회) / www.acrc.go.kr

전화번호 044-200-7217 팩스번호 044-200-7921 / dodochu@korea.kr / 비공개(5)

# < 기관별 세부이행현황 >

| 구 분 | 1-① 겸직신고 규정 구체화 (사임권고 없는 경우△) | 1-② 겸직신고서 양식 보완 | 1-③④ 겸직신고 점검공개규정화 (공개규정없으나 겸직공개△) | 2-①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파악 규정화 | 2-② 공공단체·관리인 구체화 (지방자치법 재규정△) | 3-①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명시 (징계기준 통해간접명시△) | 3-② 징계기준 설정 (수의계약 위반 징계기준 없음△) | 비 고 |
|---|---|---|---|---|---|---|---|---|
| 부산광역시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울산광역시 | ○ | ○ | △ | ○ | △ | ○ | ○ | 완료 |
| 경기도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강원도 | ○ | ○ | × | ○ | △ | ○ | ○ | 권장제외완료 |
| 충청북도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충청남도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전라북도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서울중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부산해운대구 | ○ | ○ | × | ○ | △ | ○ | ○ | 권장제외완료 |
| 부산강서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부산금정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부산동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부산서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부산영도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대구달성군 | ○ | ○ | × | ○ | △ | ○ | ○ | 권장제외완료 |
| 대구동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인천옹진군 | ○ | ○ | × | ○ | ○ | ○ | ○ | 완료(미공개) |
| 인천계양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광주광산구 | ○ | ○ | ○ | ○ | ○ | ○ | ○ | 완료 |
| 광주동구 | ○ | ○ | ○ | ○ | ○ | ○ | ○ | 완료 |
| 광주서구 | ○ | ○ | ○ | ○ | △ | ○ | ○ | 완료 |
| 광주남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대전서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울산남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
| 울산중구 | ○ | ○ | × | × | × | × | × | 일부이행 |